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- 21 호

「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16일

강릉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

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 규정 (안 제1조 ~ 안 제2조)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 사항을 명시함.

나. 운영 및 사무처리 등 (안 제3조 ~ 안 제4조)

-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, 운영 지원,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,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 사항을 명시함.

- 사무지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.

다. 인력 지원,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(안 제5조 ~ 안 제6조)

-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명시함.

라. 포상 관련 사항 (안 제7조)

-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둠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국, 전문위원, 전화: 640-4033, 팩스: 64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강릉시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·사무 처리 등) ① 대행기관장인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강릉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
제4조(사무 지원 및 준용) ①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인력 등 지원)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